

대학발전기금 관리규정

제정 2010. 09. 01 전부개정 2017. 08. 28
 개정 2018. 10. 29 개정 2022. 08. 26
 개정 2023. 06. 19 개정 2023. 09. 01
 개정 2025. 09.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학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동대학교의 구성원, 동문, 학부모, 기업 및 외부인 등이 학교 발전을 위해 출연한 현금, 유가증권, 도서, 골동품, 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실습 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종류) ① 기금은 사용목적 등의 지정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6. 19.)

1. 일반기금 :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기금 : 기부자가 용도를 특별히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 ② 지정기금 중 기금 출연 후 24개월 이내에 지정기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9., 개정 2025. 9. 8.)
- ③ 지정기금 중 기금유치인이 퇴직한 경우는 제4조 대학발전기금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9. 8.)

제2장 위 원 회

제4조(위원회) 기금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기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며,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은 산학부총장, 기획조정처장, 교육혁신처장, 입학홍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혁신전략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대학 내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10. 29., 2022. 8. 26., 2023. 9. 1.)
- 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
 2.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3. 기금출연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은 교육용 시설·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그 밖의 교육여건 개선 등 대학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정기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부자가 특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일반기금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전액 대학에 위탁관리 하도록 한다.

제9조(영수증 발급) 기부자가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10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기부자에 대우에는 기부の内容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11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 규정 개정 2023. 8.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